

□ 목 적

-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향상 도모 및 보호·관리 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의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백두대간 내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 관련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및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 지원 기준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동사업 : 참여 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 개인사업 : 7.5백만원 이하로 지원
 - 공모사업 : 100백만원 이상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 '23년 예산 : 5,934백만원(국비 4,154 , 지방비 1,187, 자부담 593)

□ 사업 신청

- 사업 시행 전년도 2월까지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전 사업부지 확보,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사무관 황재신 주무관 윤현희	042-481-8814 042-481-8815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읍·면·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당시의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다.

*** 거주란 개인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며, 마을공동체·생산자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를 말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토지와 사업부지는 일치하지 않아도 됨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생산자단체·주민

< 지원 제한기간 : 5년 이내 >

- 「보조금법」 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지 변경, 농업분야 중복 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지원요건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개인) 주민, (공동) 마을공동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개인) 주민, (공동) 생산자단체
 -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적용
 -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9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 지원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선정 우선순위

- 1)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2)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3)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산림버섯 생산시설, 버섯 자목, 방제·생산장비, 유기질비료 등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류 등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 기지원한 시설물중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관수시설, 하우스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 * 부기등기를 이행할 수 없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의 사후관리기간은 부기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와 같은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함

<지원제외 대상>

-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 부지 매입, 기본조사설계 및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 비용
- 향아리, 오크통 등 소모품
- 버섯, 관상산림식물류 재배 및 대추나무 비가림시설 외 목적의 비닐하우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산림버섯류 생산기반 조성

- 산림버섯 생산시설 : 산림버섯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 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등
- 톱밥배지 생산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 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 산림버섯 자목

- 표고버섯, 꽃송이버섯, 복령버섯 자목 등

○ 기타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솜아베기, 전지전정 등
- 관수·관정시설, 대추 비가림시설
- 생산장비 : 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 냉해예방 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작업로 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뽕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 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 (석회질비료)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 (규산질비료) 규산질 / (목재제품) 목탄, 목초액

*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질 비료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나.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 사업내용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의 작업종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위한 시설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산림버섯(송이 외)·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산과일(산머루 등)·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품목 중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 ※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 목적의 사업으로 모노레일은 지원 제외

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 및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지원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임산물 전처리(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 시설 지원

○ 임산물 운반장비

- 사업내용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반 장비·기자재 (지게차, 팔레트, 운반용 상자 등 지원. 차량 제외)
- 공모사업자 및 '19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 '19년 이전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저장·건조·가공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하되, 공모 및 공동사업 구성원중 대형면허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및 운반장비의 경우 임산물의 계절성 등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에 사용할 수 있음

라.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 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 * 백두대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시 산림청과 협의 필수
 -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적용. 총사업비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3천만 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 3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부기등기 또는 가등기 이행후 자금 지급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 해당 지자체(시장·군수)는 최종 자금을 집행하기 전까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공동사업자) : ①자치규약 운영 ②연 1회 이상 마을회의 개최
 - (공모사업자) : ①분기별 1회(건) 이상 백두대간 보호활동 실시 ②지자체에 활동실적 보고(서식 2), ③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요청 시 소득관련 자료 제출
 - (지자체) : ①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체결 현황 및 공모사업자 보호활동 실적을 산림청에 제출(사업실적 보고 시, 서식 3) ② 공모사업자 보호활동 이행여부 지도·점검
- ※ 공모사업자가 보호활동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 실적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본원칙

- 공동사업(공모사업 외)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개인사업(1가구 사업을 의미)일 경우 7.5백만 원 이하로 지원
 -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서류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농협 등 구매 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 공모사업일 경우 100백만원 이상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개인, 공동)		
산림버섯 생산시설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등 재배 시설(표고목·꽃송이버섯 자목·복령버섯 자목 구입비 포함),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재배하우스 시설: m ² 당 55,000원 기준(총사업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철골온실: 설계내역 기준 -기계·장비: 구입가격 기준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 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 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종균배양시설: 설계내역 기준 -톱밥배지시설: 설계내역 기준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표고버섯 자목	-지원대상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표고자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본당 금액 : 5,000원 (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58호)에서 표고 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
꽃송이버섯자목	-지원대상: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꽃송이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본당 금액: 1,000원 (W 30cm × L 20cm) -면적당 본수: 36본/㎡ (총적 또는 재배상 기준) -지원 한도: (개인) 5,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10,000본 이내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복령버섯자목	-지원대상: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 (100평)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복령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 (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본당 금액 : 2,000원 (W 15~20cm × L 30cm) -면적당 본수 : 577본/330㎡ -지원 한도 : (개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공모사업은 복령 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 (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 * ‘밤나무 간벌 및 정지전정 작업 지침’ 참고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방제장비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단가를 적용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 (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참고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생산장비 * 차량은 지원대상 아님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 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 (자체중량 1톤 미만)에 한하며, 단기소득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과 4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10ha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 (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중요재산 부기등기) - 굴착기는 기계장비 운영일지(또는 장비 자체 내 기록장치를 통한 기록)를 작성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구매일로부터 7년간) 동안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처분 금지 설정(부기) < 부기 등록 내용 > * 국고보조금 지급된 장비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임산물 생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해당 기계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대여업'에 활용 불가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 재배면적은 신청일 기준 산림 소득작물 재배 중인 면적임 *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단가를 적용(추가비용 자부담) (지원한도) 굴착기는 규격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나 총사업비 기준 지원한도 규격별 차등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규격별 굴착기 지원한도 - 장비중량 3.5톤 미만 : 40백만원/대 - 장비중량 3.5톤 이상 : 60백만원/대
관수·관정시설 (기타 품목)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점적: 4,500천원/0.5ha 관정(6인치, 일반형) : 9,500천원/공 *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대추 비가림 시설	-대추 이외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임산물 (머루 등) 가능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 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 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작업로 시설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 예) 경사도 10°미만 4백만 원, 10~20° 5백만 원, 20°이상 6백만 원																	
토양개량제	-석회질비료: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규산질비료: 규산질 -목재제품 : 목탄, 목초액	기준보조율에 따라 지원 (수실류)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 원 -밤 이와: ha당 총사업비 756천 원 (밤의 1.5배) (관상산림식물류)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 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단위: 원/20kg) <table border="1"><thead><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국고</th><th rowspan="2">지방비</th></tr><tr><th>특등급</th><th>1등급</th><th>2등급</th></tr></thead><tbody><tr><td>유기질비료</td><td colspan="3">(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400</td><td rowspan="2">600</td></tr><tr><td>부숙유기질비료</td><td>1,400</td><td>1,200</td><td>1,000</td></tr></tbody></table>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400			600	부숙유기질비료	1,400	1,200	1,000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 (좌측 표 참고). 초과금액 자부담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400			600															
부숙유기질비료	1,400	1,200	1,000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개인, 공동)		
송이산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의 작업종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 실행기준단가 적용
관상산림식물류	- 재배시설:하우스 시설 *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유리 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견적서 2개 이상 기준
	- 관수·관정시설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 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재배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 소 (관수시설 포함) *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2HP이상기준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사업 참조	* 소모성 자재(상토)는 지원대상 아님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700천원/0.5ha -철조망: 7,4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 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관리사	시설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인건비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 시설, 활엽관목 제거, 숙아베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2023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별목 또는 보통 인부임 적용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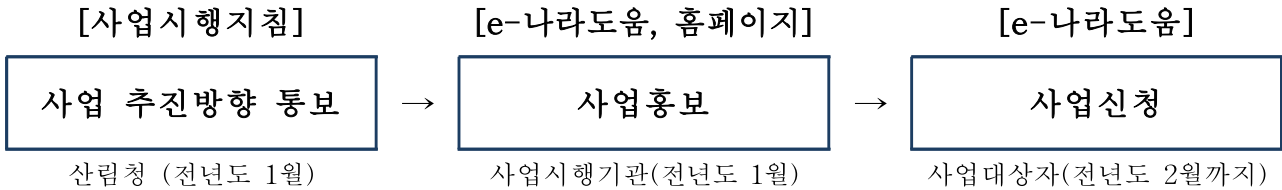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종자·종묘 구입 단일사업은 불가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개인, 공모)		
저장·건조시설	-건축: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판매장 등 -건축 외: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건축) 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시설 규모(연면적) 총합이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건축 외)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단, 개인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7.5백만원 이내 지원
가공시설	-가공: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합기, 자동소포장기 등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단, 개인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7.5백만원 이내 지원
운반장비	-운반장비: 지게차,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지원, 차량제외 -공모사업자, '19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19년 이전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저장·건조·가공시설의 규모 및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단, 개인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7.5백만원 이내 지원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운반장비와의 연계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하되, 공모 및 공동사업 구성원중 대형면허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개인, 공동)		
백두대간 브랜드화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제외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 공모사업 공고 및 선정은 전년도 5월 경 별도 실시

가. 산 립 청

- 사업 전년도 1월 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통보

나. 지 자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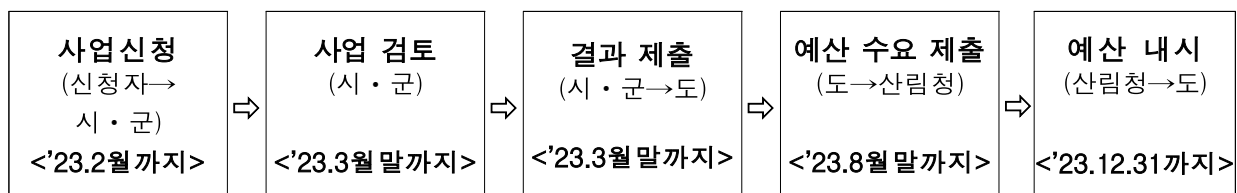
- 도는 통보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시·군의 총괄부서로 통보(1월)
- 시·군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자체 공고문으로 30일 이상 공고
 - 공고문에는 e-나라도움 사용 방법,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및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포함 필요
- 사업포기자 발생 시 대체 사업대상자 수시 신청 및 선정
 -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사업성의 적절성 검토 및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다. 사업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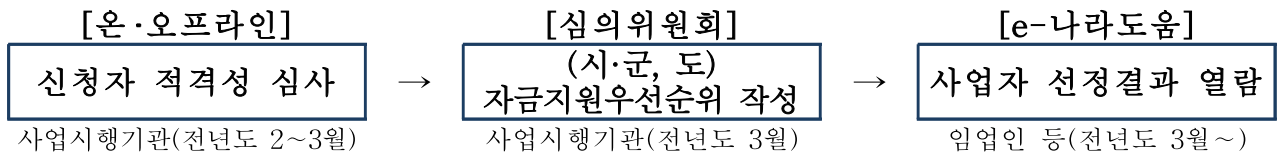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7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월 말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 시·군은 e-나라도움에 공고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대상 제외,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포함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 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23.2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에 신청

* 시·군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2. 사업자 선정



- 시·군은 백두대간 주민지원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 (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여부 등 결정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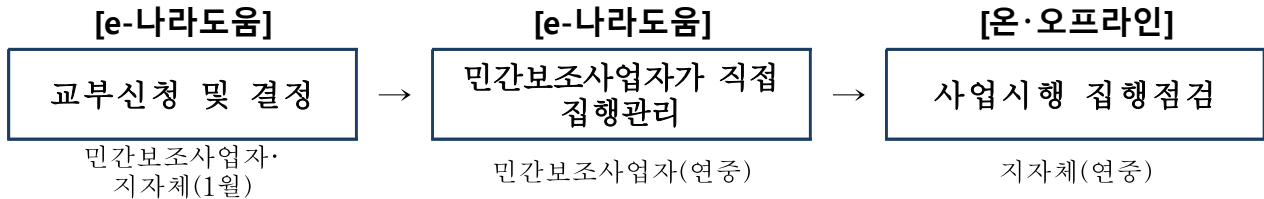
-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동 또는 공모사업으로 참여자로 1회, 개인사업으로 1회 지원 받은 경우 2회 받은 것으로 간주
 - ** 동일한 마을공동체가 구성원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동일 마을공동체가 연속 지원 받은 것으로 간주
-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IV 사업 시행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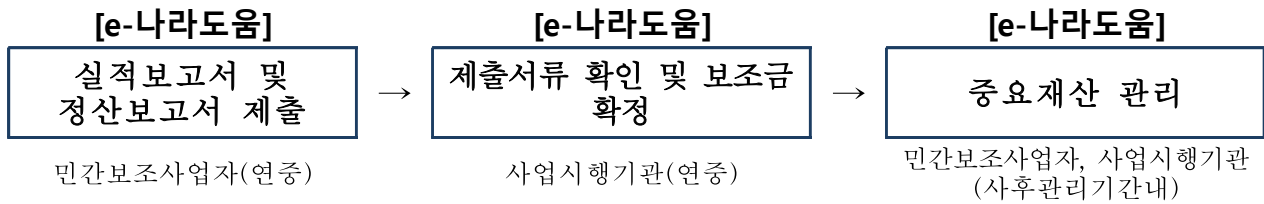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 시·군은 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 (제재부가금) 보조금 부정 수급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 시·군은 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시·군은 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자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주거대출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 계좌 설정 및 e-나라도움 등록
 - 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사업자가 e-나라도움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수의 농업인 등의 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경우 등에 따라 e-나라도움 사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IT취약계층 : 시·군이 판단하여 농업인 등이 직접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자의 집행관리를 대리수행
 - 간접보조사업자 직접 집행관리 : 지역농협, 지방공공기관 등(위탁기관)이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위탁기관이 e나라도움에 직접 집행관리
 - * 이 경우 농업인 등은 e-나라도움에 직접 가입하여 집행되지 아니하며,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한 집행결과서를 직접입력(엑셀서식 등)하는 것으로 수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할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자치단체보조사업(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군·구)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가. 산림청

- 산림청은 연 1회 이상 지자체와 합동점검 추진
 - 정부지원 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 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다. 사업관리주체(도)

- 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시·군은 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제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 적용
- 시·군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같은 규정 제79조에 따라 환수금액에 따른 지원제한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름

<참고> 보조금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사항 안내>

1.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2. (보조금의 범위)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조금 전체 금액
3. (기준) ① 거짓신청에 따른 교부금액의 5배 이내, ② 용도 외 사용 금액의 3배 이내,
③ 교부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교부금액의 1배 이내
4. (사유) 조사결과 거짓신청(정산, 위장공모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5. (유의사항) 동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처분시 산림청 통보 의무화(지자체), 선물용품·노래방 등 시혜성(사행성) 경비 및 정산시 종이계산서 불인정(※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6. (절차) 제재조치 과정



V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정산

2. 평가

- 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농식품사업 사업시행지침 및 안내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아그릭스)에 별도로 게시되어 있으니, 세부자료나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방문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명	현행(2022)	변경(2023)	변경사유
백두대간 주민지원	<3. 지원대상> ○ 지원제외 대상 -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 부지 매입, 기본조사설계 및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 비용	<3. 지원대상> ○ 지원제외 대상 -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 부지 매입, 기본조사설계 및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 비용 - <u>항아리, 오크통 등 소모품</u> - <u>버섯, 관상산림식물류 재배 및 대추나무 비가림시설 외 목적의 비닐하우스</u>	○ 지원품목의 명료화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u>공동사업자 자치규약 운영 및 마을회의 개최</u>	○ 수혜받은 시설의 관리 및 소득분배에 대한 민원 예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고버섯 자목 분당 금액 <u>4,852원</u> ○ 생산장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고버섯 자목 분당 금액 <u>5,000원</u> ○ 생산장비 - <u>(중요재산 부기등기) 굴착기 기계장비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기간(구매일로부터 7년간) 동안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처분 금지 설정(부기) < 부기 등록 내용 ></u> * <u>국고보조금 지급된 장비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임산물 생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u> * <u>해당 기계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대여업'에 활용 불가</u>	○ 임업인 요구 수용 및 산림소득증대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 지원 목적 사용 및 부정수급 방지

사업명	현행(2022)	변경(2023)	변경사유
	○ 관수·관정시설(기타품목) ○ 대추 비가림 시설	○ 관수·관정시설(기타품목) - <u>관정(6인치, 일반형) : 9,500천원/공</u> ○ 대추 비가림 시설 - <u>대추 이외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임산물(머루 등) 가능</u>	○ 임업인 요구 수용 및 산림소득증대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 임업인 요구 수용 및 산림소득증대사업과의 형평성 고려